

의안번호	2215265
의 퇴 인	박해철의원
회 답 일	2026.3.5.
추 계 번호	25B7200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처리종사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, 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·인력·차량·안전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점검·실태조사 실시(안 제14조의5제1항)

-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종사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, 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(이하 “안전기준”)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
 - －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행법 제14조의5제1항¹⁾에 따라 「생활폐기물 수집·

1) 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

운반 안전기준 제도 운영」 사업을 통해 한국폐기물협회가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동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1억 8,200만원임

- (안전기준 마련)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, 소각, 매립 등의 처리과정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(안전점검 및 실태조사) 현행법에 따라 ‘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’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가 수행되어 왔으나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‘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’까지 점검 및 실태조사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구용역의 수행여부 및 안전점검·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수행방식·조사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해당 사항들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□ 생활폐기물 처리자에 대한 지원(안 제14조의5제3항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·인력·차량·안전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, 지원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행법 제14조의5제3항²⁾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·차량 등의 확보와 관련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사업은 편성·운영되고 있지 않음

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·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2) 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·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원의 대상 및 수준·범위·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